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

-제 비[160806-1호-

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

제출인	상호(대표자) (주)민성건설	사업자등록번호 416-81-64417
	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원동길 40(사무실) 103-4번지	
건 축 물	건물명 포술2교육단 여군교육생 숙소 철거공사	위치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태청로 428
	연면적(㎡) 1036.8㎡	작업기간 : 2016년 08월 16일~17일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㎡)·부피(㎥)] 883.64㎡ *(필요 시 별지 첨부)*	
측정기관	대표자 고강영	사업자등록번호 410-86-24557
	주 소 전북 군산시 축동안3길 24, 한성빌딩 3F (주)아쌤석면환경연구원	
측정 일시	2016년 08월 16일 ~ 17일	
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 석면
	뒷면 별첨			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뒷면 별첨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2016 년 월 일

제출인 (주)민성건설 대표자 정 민 성 (서명 또는 인)

장성군수 귀하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1-1. 측정 결과

측정 일시	2016년 08월 16일	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 석면	초과여부
	1	부지경계선1	0.0000	-	기준치미만
	2	부지경계선2	0.0000	-	기준치미만
	3	부지경계선3	0.0000	-	기준치미만
	4	부지경계선4	0.0000	-	기준치미만
	5	작업장주변	0.0000	-	기준치미만
	6	위생설비입구	0.0004	-	기준치미만
	7	음압기공기배출구	0.0016	-	기준치미만
	8	폐기물반출구	0.0004	-	기준치미만

2-1. 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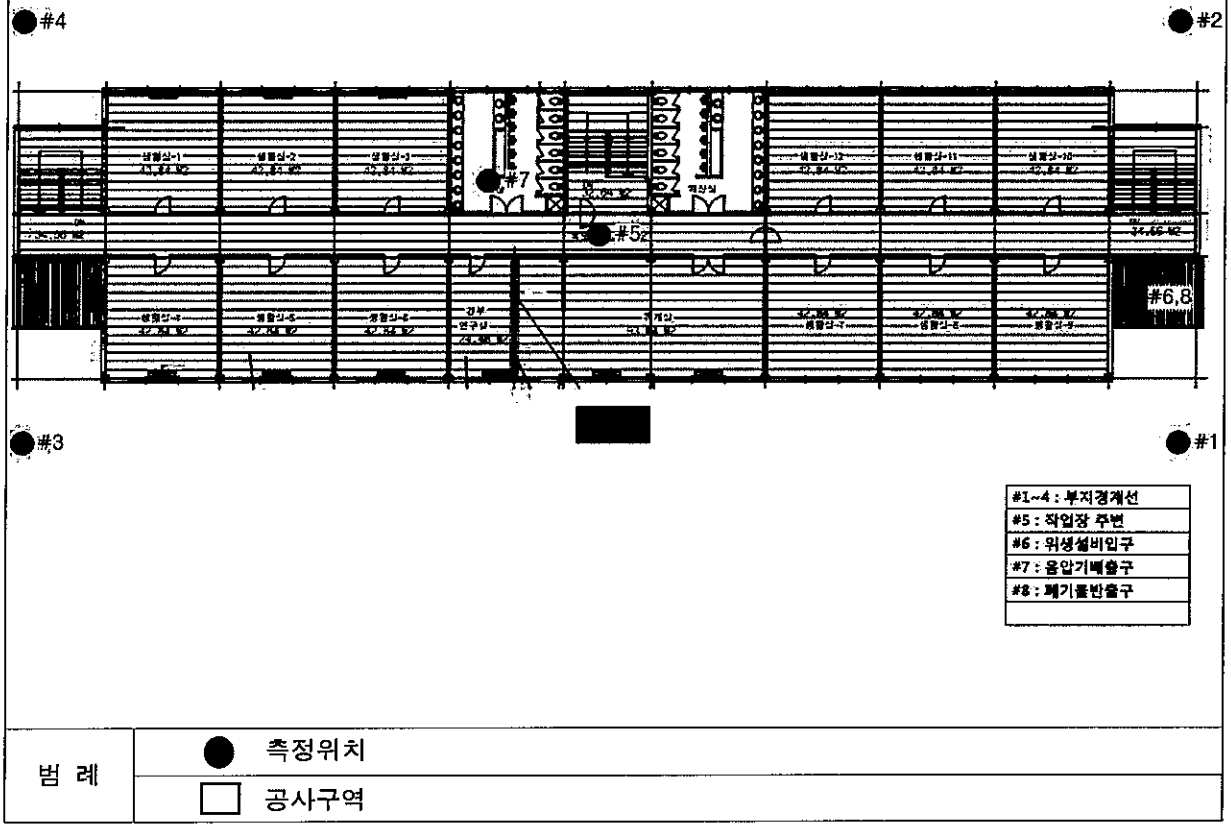

범 례	● 측정위치
	□ 공사구역

측정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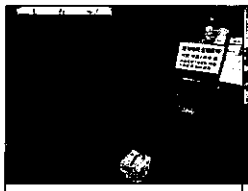		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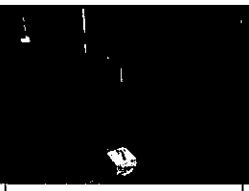	
<부지경계선1>	<부지경계선2>	<부지경계선3>	<부지경계선4>	<작업장주변5>
	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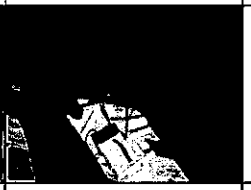		
<위생설비입구6>	<음압기공기배출구7>	<폐기물반출구8>		

1-1. 측정 결과

측정 일시	2016년 08월 17일				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결과(f/cc)	검출 석면	초과여부
	1	부지경계선1	0.0000	-	기준치미만
	2	부지경계선2	0.0000	-	기준치미만
	3	부지경계선3	0.0000	-	기준치미만
	4	부지경계선4	0.0000	-	기준치미만
	5	작업장주변	0.0000	-	기준치미만
	6	위생설비입구	0.0004	-	기준치미만
	7	음압기공기배출구	0.0012	-	기준치미만
	8	폐기물반출구	0.0004	-	기준치미만

2-1. 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측정 지점 위치(도식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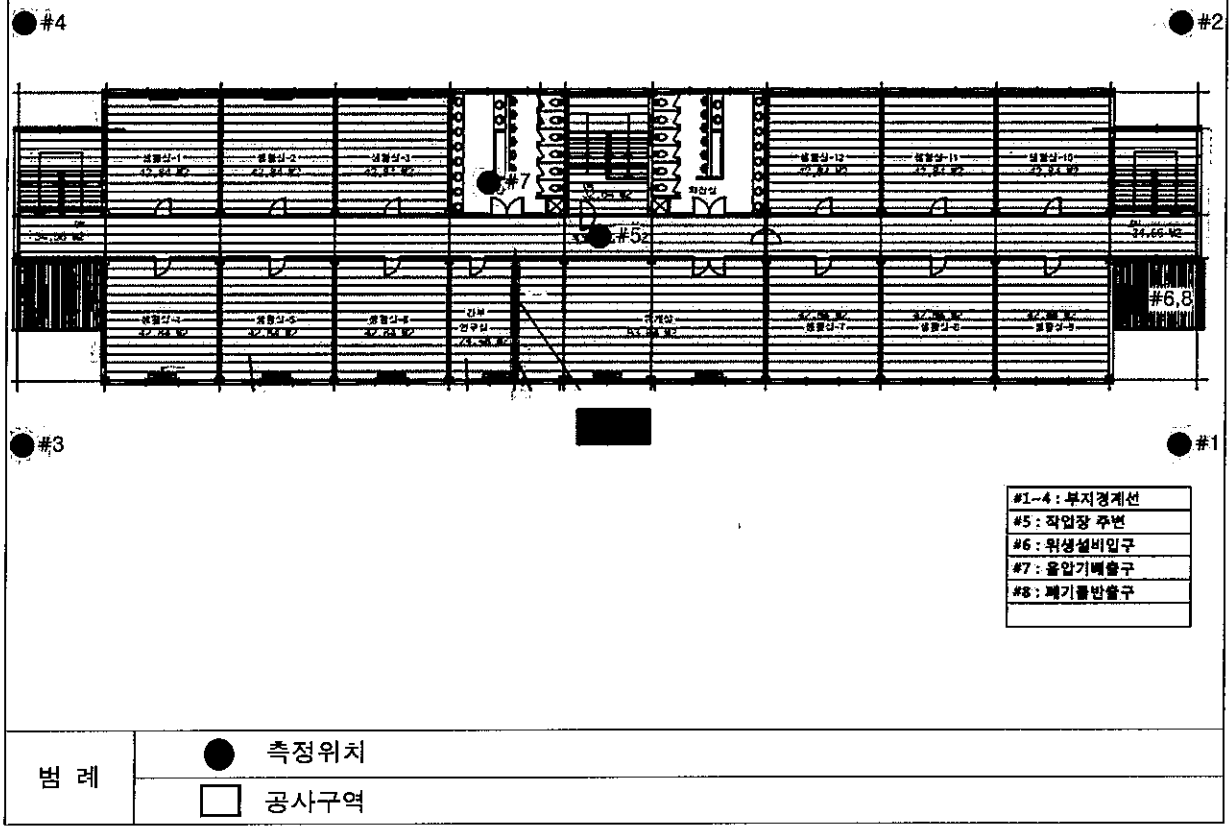

범 례	● 측정위치
	□ 공사구역

측정 사진

		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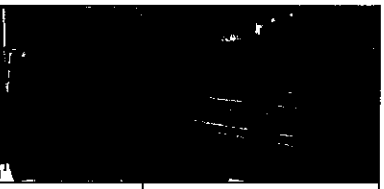	
<부지경계선1>	<부지경계선2>	<부지경계선3>	<부지경계선4>	<작업장주변5>
<위생설비입구6>	<음압기공기배출구7>	<폐기물반출구8>		

제2014-120001호

석면조사기관 지정서(변경)

기 관 명	(주)아쎔석면환경연구원	
소 재 지	(573-370)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안3길 24 3층(한성빌딩)(수송동 -)	
대표자성명	고강영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2. 석면조사기관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38조의2 규정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14. 7. 8

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